



스마트폰으로 좌측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천안신불당 행복주택(아산탕정 1-A1블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uldanga1.co.kr



대표전화 : 1600-1004, 041)537-2774

LH홈페이지 : www.lh.or.kr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2018.08

천안의 중심을 당당히 누릴 기회!

위풍당당 천안신불당



점음특권 행복주택

천안^신불당 아산탕정 1-A1블록

16㎡ · 26㎡ · 36㎡ | 총 740세대



풍요로운 도시! 여유로운 일상! 매일매일 웃음꽃 피는 나를 만나다!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에게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립니다.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행복주택!

살기 참 좋은 도시,
튼튼한 나의 보금자리

천안신불당 행복주택 아산탕정 1-A1블록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남다른 미래가 펼쳐질
천안신불당 행복주택 (아산탕정1-A1블록)

행복주택이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2030세대가 집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에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지향합니다.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진 직장·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2018년
행복주택
대박완화**

반가운 기회가 더 크게 열리다!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청약가능
- 젊은 계층의 청약가능지역 제한 완화
- 청년 및 신혼부부의 소득활동요건 삭제
- 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 요건 완화 (5년 ▶ 7년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신불당 행복주택 공급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급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대학생 계층 (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사회초년생)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로 구직급여 지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천안시·아산시에 거주하며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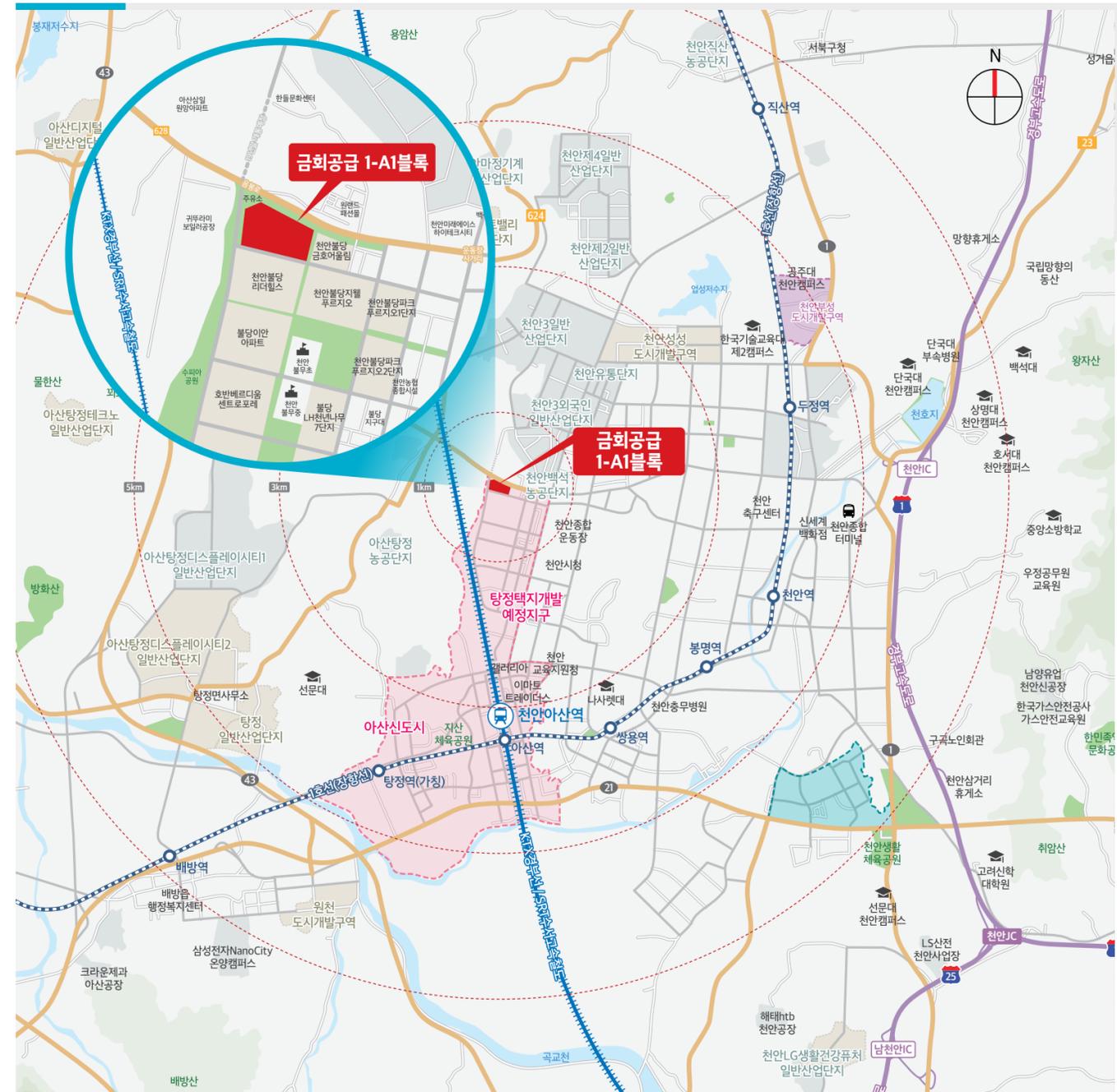
주거급여수급자

천안시·아산시에 거주하며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주거급여수급자



행정, 교통, 교육, 생활, 직주근접까지
당신이 원하는 인프라! 그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누릴 원더풀 라이프의 시작!

SPECIAL LOCATION 천안의 중심 불당을 누리다! 천안신불당 행복주택



천안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이곳,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이 자리
꿈꿔온 일상이 한층 더 여유롭게 펼쳐지다!



원거리 쾌속교통

- +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갖춘 교통의 메카
- + 약 3km 거리에 KTX-SRT 천안아산역, 1호선 아산역 위치
- + KTX-SRT 이용 시 서울까지 약 30분대 접근

원스톱 쾌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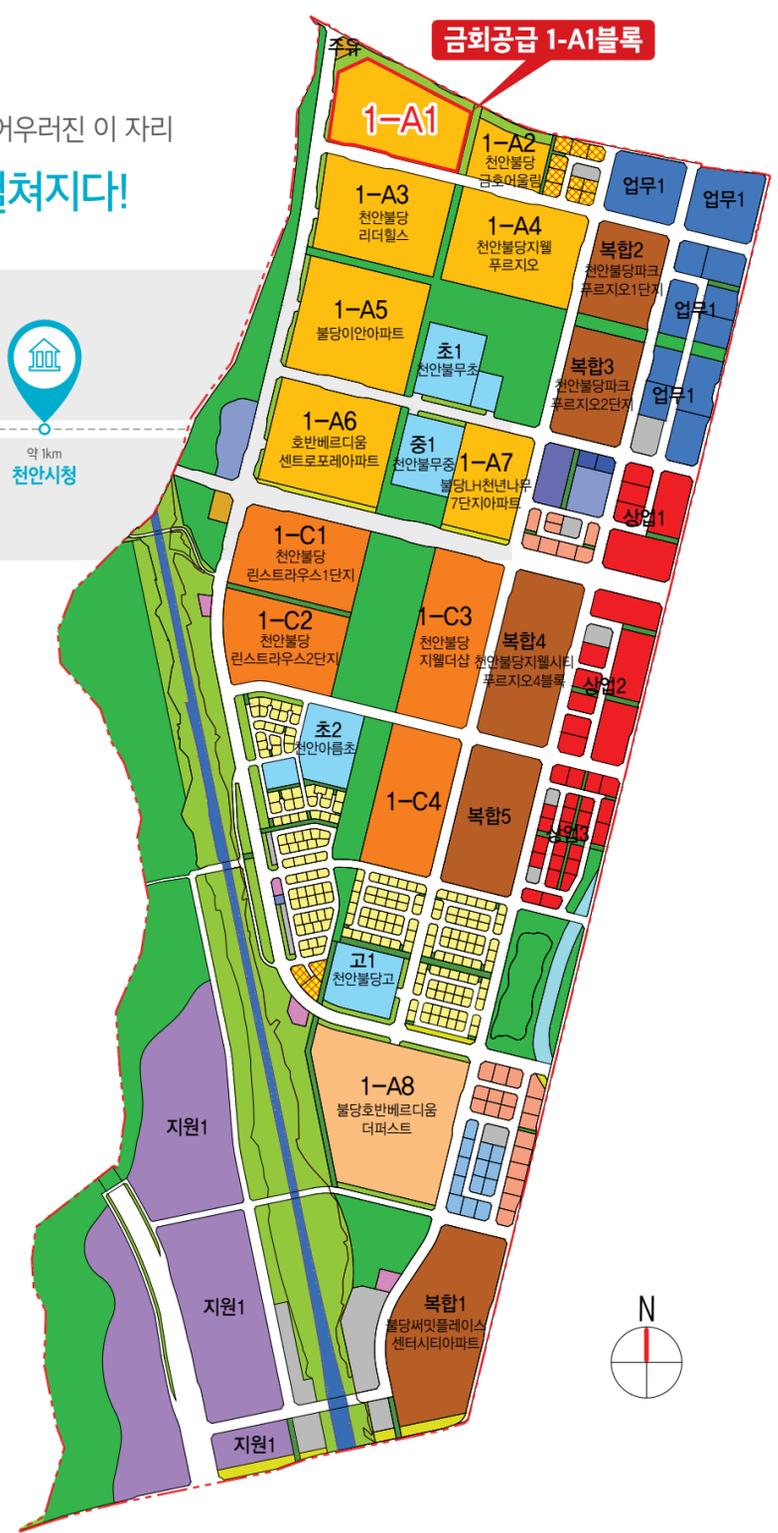
- + 천안시청과 인접한 천안의 새 중심지!
- +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중심상권과 가까운 쾌적 생활권
- + 갤러리아백화점, 펜타포트몰, 대형할인마트 등 최상의 쇼핑 인프라

원스텝 우수교육

- + 단국대, 상명대, 백석대, 나사렛대 등 다수 대학 근거리 위치
- +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캠퍼스 라이프

원더풀 출근환경

- + 천안일반산업단지,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충남천안교육지원청, 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 등
- + 가깝고 편리한 출퇴근 환경으로 삶의 질 향상



※ 본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교통망도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은 더욱 가까워지고,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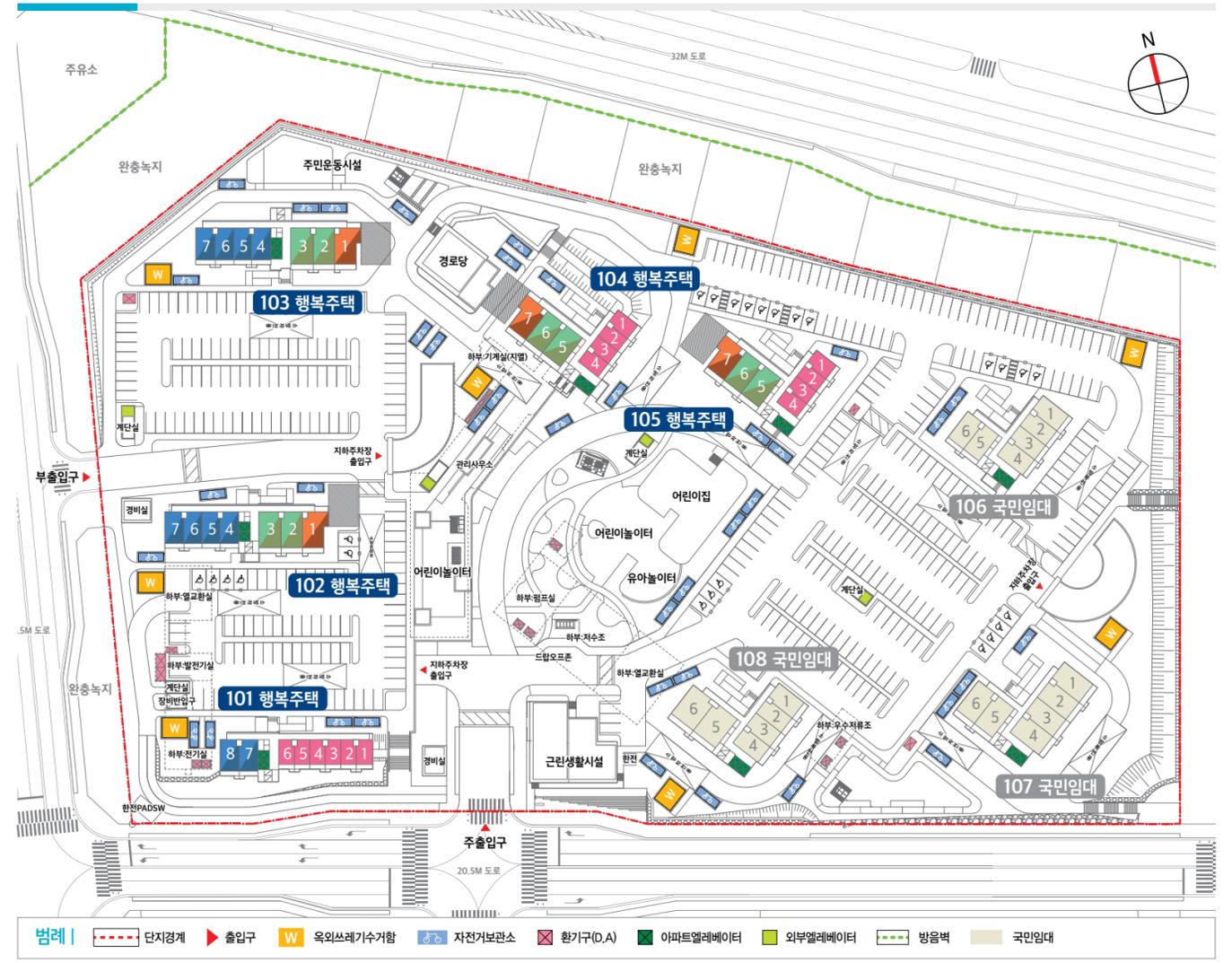
여유로운 일상이 돋보이는 천안신불당 행복주택

SPECIAL LANDSCAPE

빛과 바람의 소통을 고려한 단지배치,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설계,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



- 어린이집**
미취학 어린이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단지내 독립된 보육시설을 조성합니다.
- 경로당**
어르신들의 취미공간, 담소공간이 되어줄 쾌적한 경로당을 마련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
입주민 부재시에도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 보관함을 적용합니다.
- 작은도서관**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마련, 입주민의 도서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게스트 하우스**
방문객의 편의와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게스트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2세대)
- 공동육아나눔터**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상기 시설은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안신불당 아산탕정 1-A1블록 총 1,146세대

행복주택 740세대 [금회공급]						----- 축세대		국민임대 406세대 [별도공급]							
16A	278세대	26A	166세대	26B 주거민자용	20세대	36A	168세대	36B 주거민자용	16세대	36C	84세대	36D 주거민자용	8세대	국민임대	406세대

※ 아산탕정1-A1블록은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혼합단지입니다.

※본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의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SPECIAL UNITPLAN

16A

16A 278세대

주택 면적

주거 전용	16.5200 m ²
주거 공용	10.2526 m ²
지하주차장	6.0383 m ²
기타 공용	1.2030 m ²

실별 면적

거실 / 침실	8.23 m ²
주방 / 식당	4.27 m ²
욕실	2.57 m ²
현관	1.45 m ²

발코니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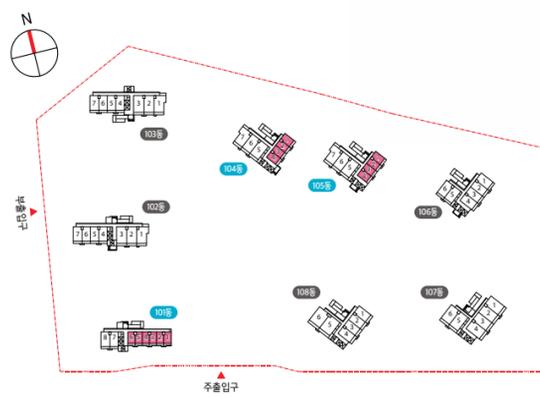
발코니 계	4.97 m ²
-------	---------------------

- 빌트인 생활용품**
- ▶ 냉장고(소형) 및 냉장고장
 - ▶ 가스쿡탑 (2구형)
 - ▶ 책상 겸 식탁/책장

1640 | 1270 | 810 |



Key Map



※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X0.3025=평)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일부 타입 제외) ※ 신발장 후면에 전기단차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호배정은 주택형내에서 항별·층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발코니 난간대는 유공판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UNITPLAN
26A

26A 166세대
26B (주거약자용) 20세대

주택 면적

주거 전용	26.4800 m ²
주거 공용	16.4341 m ²
주차장	9.6788 m ²
기타 공용	1.9284 m ²
계약 면적	54.5213 m ²

실별 면적

거실 / 침실	14.17 m ²
주방 / 식당	6.89 m ²
욕실	3.05 m ²
현관	2.37 m ²

발코니 면적

발코니 계	5.64 m ²
-------	---------------------

주거약자용



1750 | 1770 | 800 |



1595 | 2510 | 4860 | 11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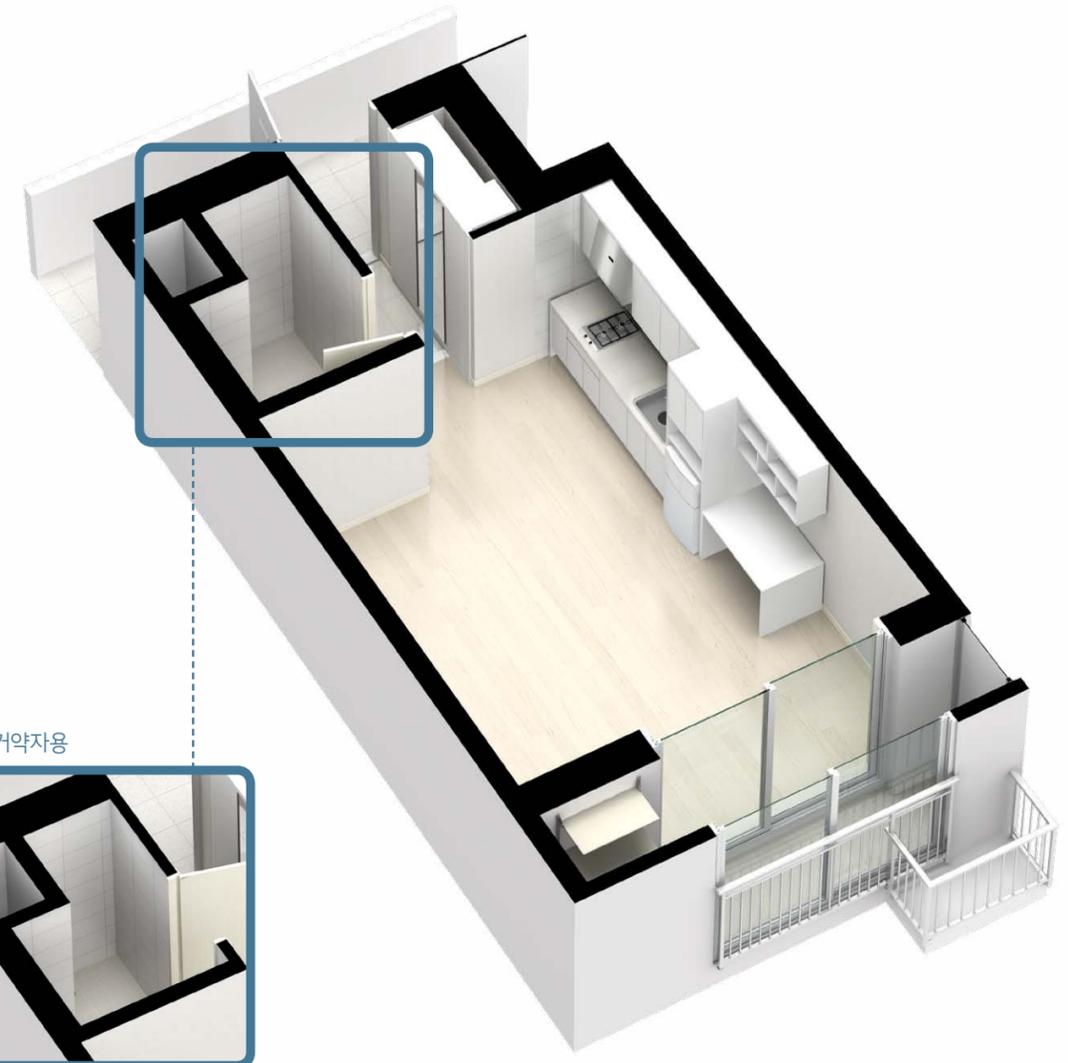
1595 | 7370 | 1125 | 4320 |

주거약자용 세대 내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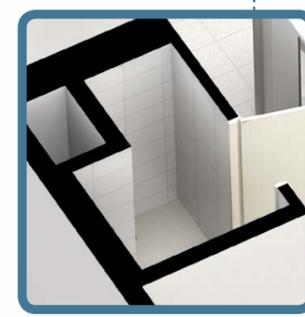
- ▶ 외여닫이 욕실문
- ▶ 욕실 손잡이
- ▶ 현관 손잡이

빌트인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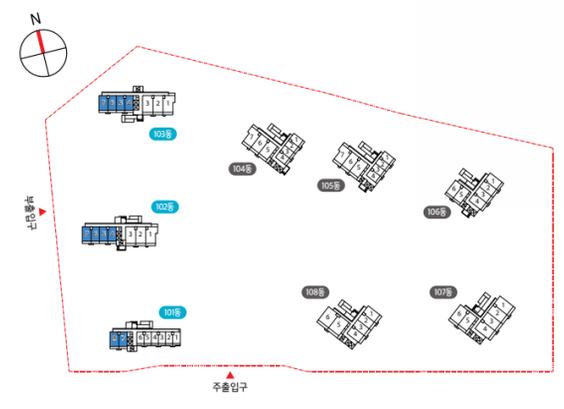
- ▶ 냉장고(소형) 및 냉장고장
- ▶ 가스쿠티 (2구형)
- ▶ 책상 겸 식탁/책장



주거약자용



Key Map



※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로 표기하였습니다. (m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0.3025=평)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일부 타입 제외) ※ 신발장 후면에 전기단자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내에서 항별·층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발코니 난간대는 유공판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에는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SPECIAL UNITPLAN

36

36A 168세대
36B(주거약자용) 16세대

주택 면적

주거 전용	36.5300 m ²
주거 공용	22.6714 m ²
주차장	13.3523 m ²
기타 공용	2.6603 m ²
계약 면적	75.2140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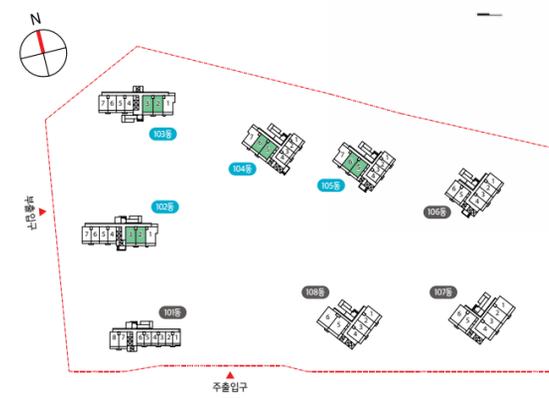
실별 면적

거실 / 침실	13.87 m ²
주방 / 식당	10.67 m ²
욕실	3.08 m ²
현관	2.39 m ²
침실 1	6.52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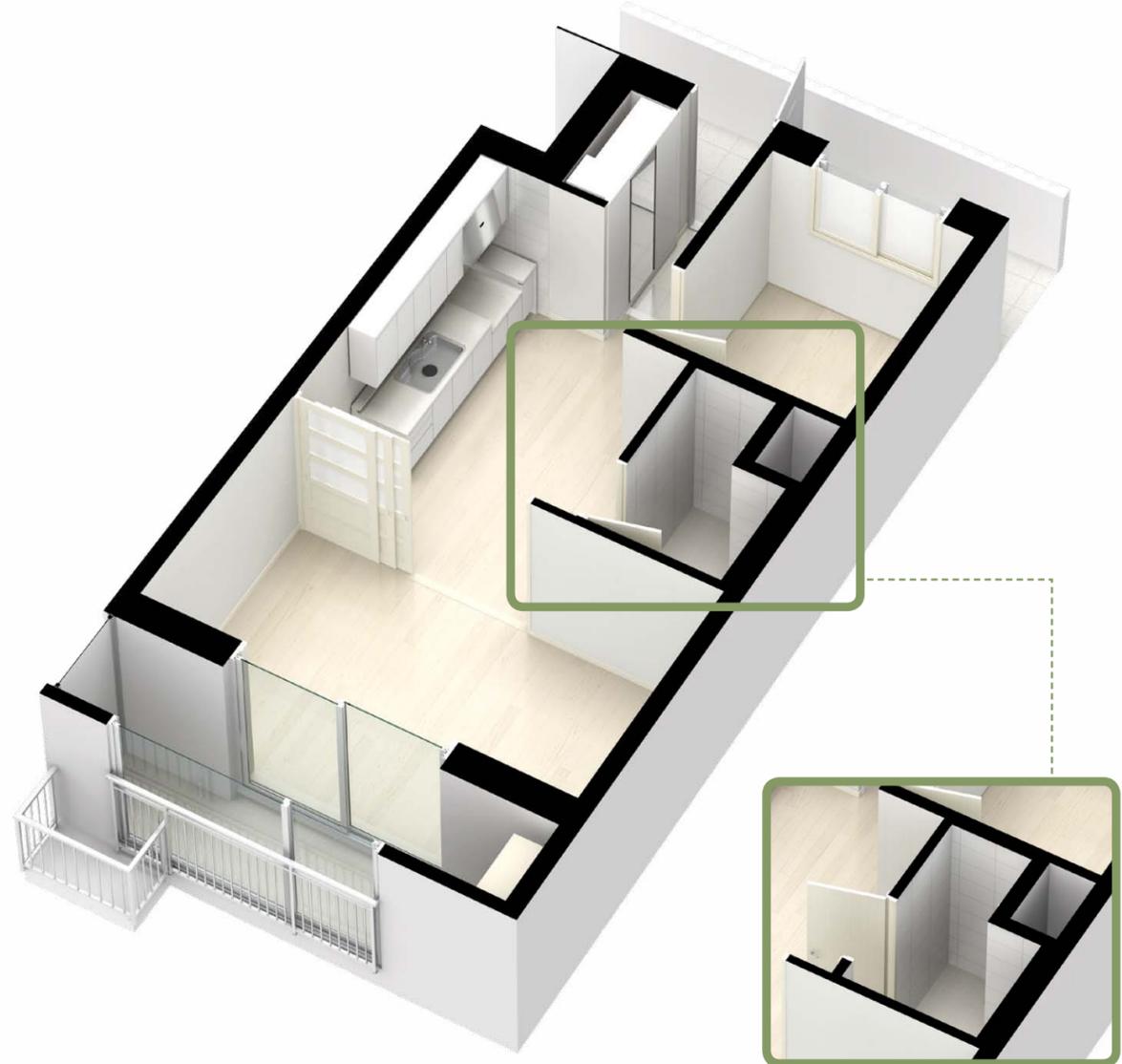
발코니 면적

발코니 계	7.50 m ²
-------	---------------------

Key Map



- 주거약자용 세대 내 편의시설
- ▶ 외여닫이 욕실문
 - ▶ 욕실 손잡이
 - ▶ 현관 손잡이



※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X0.3025=평)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 (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일부 타입 제외) ※ 신발장 후면에 전기단자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점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내에서 향별·층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발코니 난간대는 유공판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UNITPLAN

36

(측세대)

36C 84세대
36D(주거약자용) 8세대

주택 면적

주거 전용	36.7100 m ²
주거 공용	22.7831 m ²
주차장	13.4181 m ²
기타 공용	2.6734 m ²
계약 면적	75.5846 m ²

실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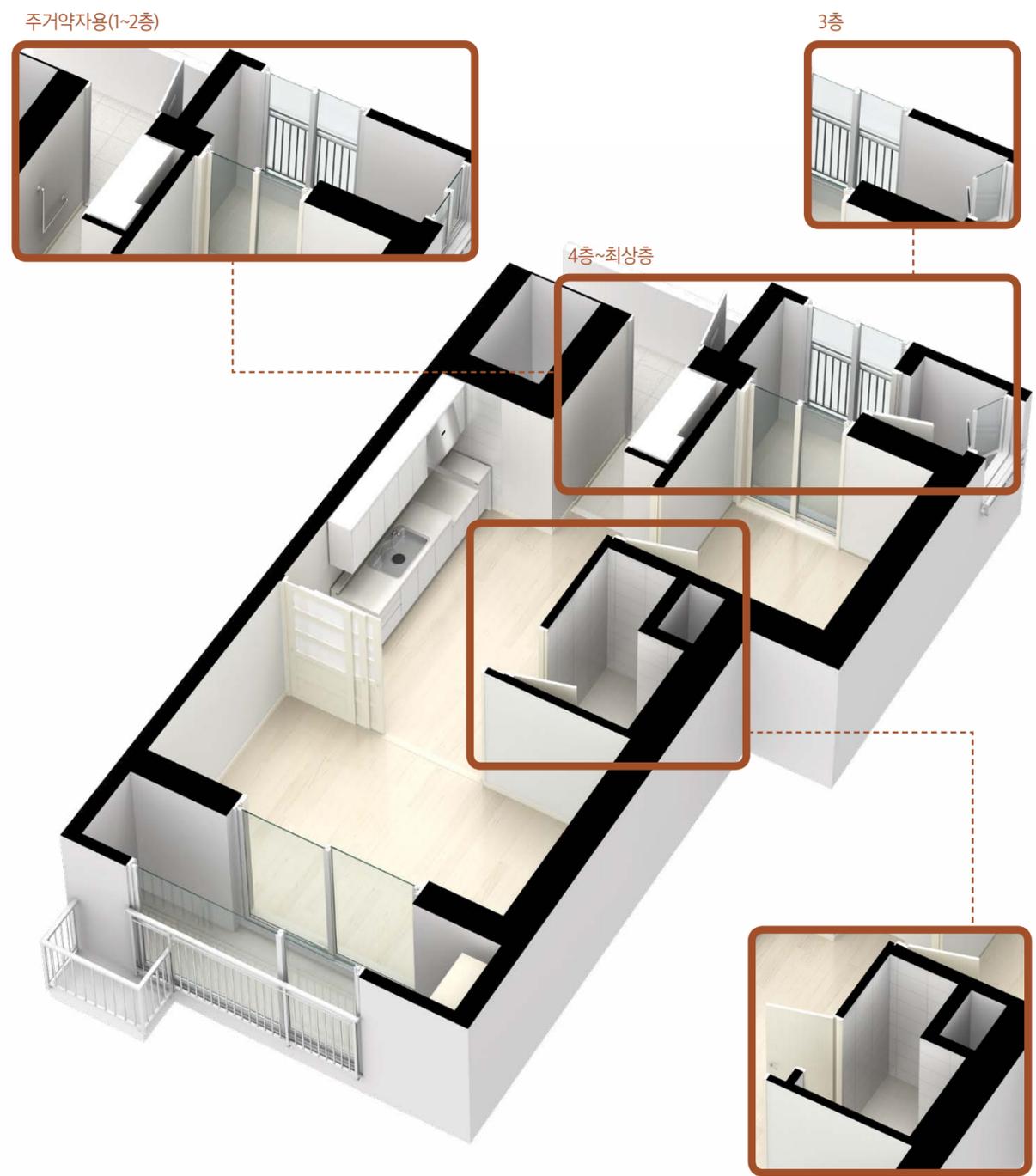
거실 / 침실	13.16 m ²
주방 / 식당	10.82 m ²
욕실	3.08 m ²
현관	2.38 m ²
침실 1	7.27 m ²

발코니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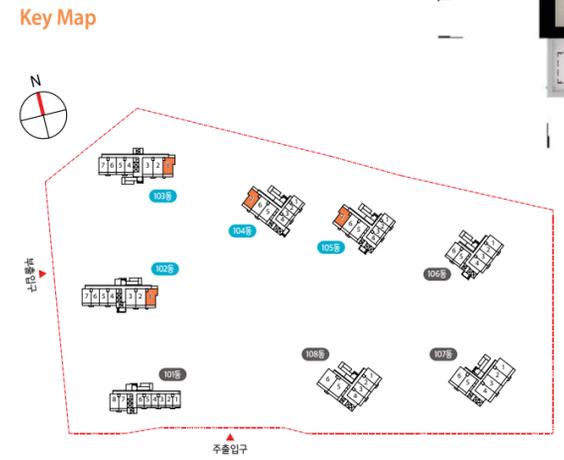
발코니 계	12.04 m ²
-------	----------------------



- 주거약자용 세대 내 편의시설
- ▶ 외여닫이 욕실문
 - ▶ 욕실 손잡이
 - ▶ 현관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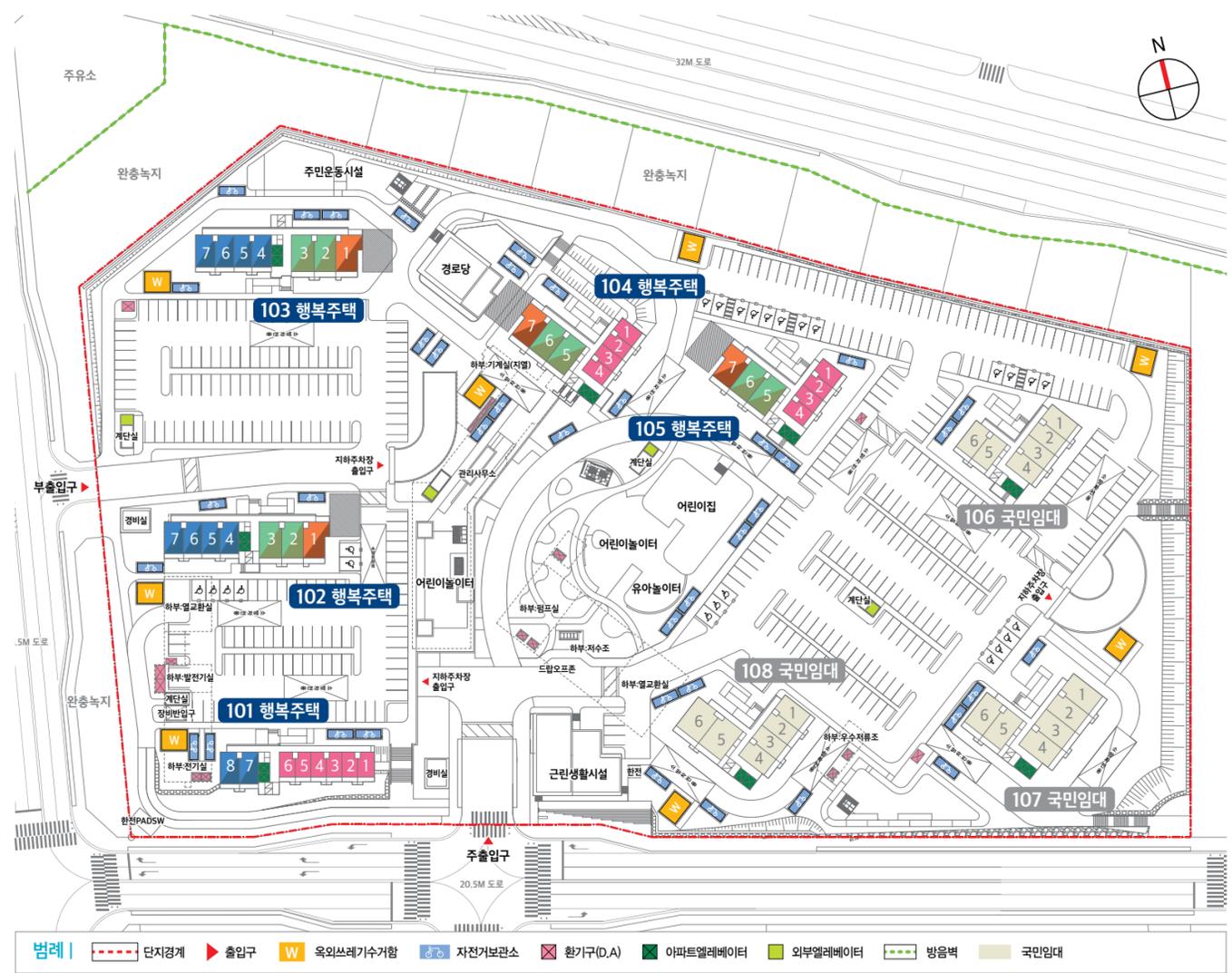


주거약자용(1~2층)



※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X0.3025=평)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일부 타입 제외) ※ 신발장 후면에 전기단자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6C 및 36D형 주택은 측세대로서 36C형은 36A형에, 36D형은 36B형에 청약하셔야 하며 전산추첨에 따라 항별·층별 구분없이 A또는C, B또는D형 주택이 배정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 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발코니 난간대는 유공판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안신불당 행복주택(아산탕정1-A1블록)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도



※상기 시설은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안신불당 아산탕정 1-A1블록 총 1,146세대

행복주택 740세대 [금회공급] ----- 축세대

16A 278세대 26A 166세대 26B 주거지역용 20세대 36A 168세대 36B 주거지역용 16세대 36C 84세대 36D 주거지역용 8세대

국민임대 406세대 [별도공급]

국민임대 406세대

※ 아산탕정1-A1블록은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혼합단지입니다.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6A						26A	
						26B	

101동 104세대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4	905	906	907
801	802	803	804	805	806	807
701	702	703	704	705	706	707
601	602	603	604	605	606	607
501	502	503	504	505	506	507
401	402	403	404	405	406	407
301	302	303	304	305	306	307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36C			36A			26A
36D			36B			26B

102동 126세대

2401	2402	2403				
2301	2302	2303	2204	2205	2206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36C			36A			26A
36D			36B			26B

103동 160세대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4	905	906	907
801	802	803	804	805	806	807
701	702	703	704	705	706	707
601	602	603	604	605	606	607
501	502	503	504	505	506	507
401	402	403	404	405	406	407
301	302	303	304	305	306	307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6A			36A			36C
			36B			36D

104동 175세대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4	905	906	907
801	802	803	804	805	806	807
701	702	703	704	705	706	707
601	602	603	604	605	606	607
501	502	503	504	505	506	507
401	402	403	404	405	406	407
301	302	303	304	305	306	307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6A				36A		36C
				36B		36D

105동 175세대

젊음특권 행복주택

천안 불당

아산탕정 1-A1블록

주요마감재 내역

구분	품목	16㎡ / 26㎡	36㎡
현관	현관바닥	자기질 타일	
	현관벽지	실크벽지	
	신발장	HPM (가구전용)	
	현관도어록	레버형 도어록	
	현관천정지	발포천정지	
	현관등	센서등	
	걸레받이	인테리어시트마감	
거실 / 침실	거실바닥재	룸카펫	
	거실벽지	실크벽지	
	거실천정지	발포천정지	
	거실문짝	목재 미서기문	
	거실등	LED	
	걸레받이	인테리어시트마감	
주방 / 식당	주방바닥	룸카펫	
	주방벽지	실크벽지	
	주방천정지	발포천정지	
	주방가구	HPM (가구전용)	
	개수대	언더싱크용	
	렌지후드	디렉스형	
	주방싱크수전	절수형	
	주방가구상판	BMC	
걸레받이	인테리어시트마감		
침실	침실바닥재	-	룸카펫
	침실벽지	-	실크벽지
	침실천정지	-	발포천정지
	침실문짝	-	합성수지(ABS)
	창호	-	합성수지제
욕실	세면기	도기류	
	양변기	도기류	
	샤워수전	싱글레버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욕실문짝	합성수지(ABS)	
	욕실타일	벽 : 도기질타일, 바닥 : 자기질타일	
발코니	창호	합성수지제	
	세탁기수전	세탁기용 가로꼭지 + 물뿌리개 호스	
정보통신	비디오폰	컬러비디오폰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 적용된 마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천안신불당 행복주택 아산탕정 1-A1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

- 22 ① 건설위치
- 22 ② 임대대상 및 조건
- 23 ③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29 ④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30 ⑤ 신청서류
- 33 ⑥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34 ⑦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37 ⑧ 유의사항
- 41 ⑨ 주택성능등급 수준
- 42 ⑩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42 ⑪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항목 안내

천안신불당 행복주택(아산탕정1-A1BL)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8.08.30)

1 건설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63 (건설규모 : 행복주택 740호)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1953.08.30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LH 아산사업단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아산탕정(1-A1BL) 행복주택 **우선공급** 청약신청 시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 받고자 하시는 분(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제외)**은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하시어 현장방문 접수를 하셔야 하며 인터넷 청약접수 시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3대까지, 독립유공자는 5대까지) 중 한 명이 가점을 적용받으며 중복으로 부여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제외)
- 금회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혼합단지로서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두 종류의 임대주택에 모두 청약가능합니다. (천안신불당 국민임대주택(아산탕정 1-A1BL) 공고문은 LH청약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능력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청약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공급일정 요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요약으로써 반드시 본 공고문을 끝까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탕정(1-A1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로 귀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 ③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④ 고령자 : 해당주택건설지역(천안시·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자
- ⑤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주택건설지역(천안시·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	서류접수	당첨자발표	계약
9.12(수)~9.18(화)	10.5(금) 16시	10.15(월)~10.19(금)	'19.1.4(금)	온라인 : '19.1.18(금)~1.20(일) 현 장 : '19.1.22(화)~1.24(목)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태	세대 당 계약면적(m)					공급 대상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월 임대료			
16A	16.52	10.2526	1.2030	6.0383	34.0139	대학생	74	16,320	3,264	13,056	95	(+) 7,000	23,320	60,000	6	철근 콘크 리트 (벽식)	'19.06 (예정)
						소득유	17,280	3,456	13,824	100	(+) 8,000	25,280	60,000	6			
															소득유	17,280	

공급 형태	세대 당 계약면적(m)					공급 대상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천원)
26A	26.48	16.4341	1.9284	9.6788	54.5213	청년	소득무	53	53	25,500	5,100	20,400	148	(+) 17,000	42,500	63,000	6	철근 콘크 리트 (벽식)
주거급여 수급자	30	30	22,500	4,500	18,000	131	(+) 14,000	36,500	61,000	20								
											고령자 (주거약자용)	10	10	26,980	5,396	21,584	157	(+) 18,000
신혼부부	92	92	38,400	7,680	30,720	224	(+) 26,000	64,400	94,000	6~10								
											청년	소득무	12	12	32,640	6,528	26,112	190
소득유	34,560	6,912	27,648	201	(+) 24,000	58,560	81,000	6										
									고령자	15	15	36,480	7,296	29,184	212	(+) 25,000	61,480	87,000
주거급여 수급자	7	7	28,800	5,760	23,040	168	(+) 20,000	48,800										
									고령자 (주거약자용)	12	12	36,480	7,296	29,184	212	(+) 25,000	61,480	87,000
소득유	36,712	7,296	29,412	212	(+) 29,000	74,480	108,000	2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천하여 공급합니다.
- 36A·36C형과 36B·36D형(주거약자용)은 주거약자용 주택여부만 구분하며 주택형별 접수로서(36A형과 36C형 통합추첨, 36B형과 36D형 통합추첨, 타입별 접수 아님), 동호배정은 형별 총별 타입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합니다.
- 26A형의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평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평형의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 · 36C형의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일평형의 계층에게 순서대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계층" ▶ "청년 계층" ▶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36A · 36C형의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일평형의 계층에게 순서대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청년 계층" ▶ "신혼부부 계층" ▶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36A · 36C형의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의 일반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일평형의 계층에게 순서대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 ▶ "청년 계층" ▶ "신혼부부 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36A · 36C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일평형의 계층에게 순서대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계층" ▶ "신혼부부 계층" ▶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평형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 · 36B · 36D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 및 26A형 "청년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 가스쿠팡(2구)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신혼부부 계층 일반공급 제외)**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중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를 1세대로 간주합니다.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대학생은 ①-㉔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㉔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table border="1"> <tr> <th>가구원수</th> <th>월평균소득기준</th> </tr> <tr> <td>3인 이하</td> <td>5,002,590원 이하</td> </tr> <tr> <td>4인 · 5인</td> <td>5,846,903원 이하</td> </tr> <tr> <td>6인</td> <td>6,220,005원 이하</td> </tr> </table>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05,805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은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 및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본인의 부 또는 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 및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본인의 부 또는 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단,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구원수 산정시 제외)
 - (공급신청자가 동거인인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 및 부모(공급신청자 본인의 부 또는 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자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충남 천안시, 아산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남 당진시, 공주시, 예산군, 충북 청주시, 진천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예산군 제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지역요건	천안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대학생	부모 모두 충남 천안시 및 연접지역* 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천안시의 연접지역*에 거주 (단, 부모 모두 천안시외에 거주해야 함)
② 취업준비생	천안시에 3년 이상 거주	천안시에 3년 미만 거주
③ 국가유공자 (추가배점)	국가유공자** 가족(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3대(단, 독립유공자는 5대) 직계비속까지 포함) 중 1인 : 3점	

* 연접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남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주시, 진천군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전·공상·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외유군인, 4.19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등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신 후 현장에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16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㉔와 ②~⑤를 만족하면 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㉔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㉔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8.08.31~1999.08.30)																				
①-㉔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주택공급 신청자</th> <th rowspan="2">가구원수</th> <th colspan="2">월평균소득기준</th> </tr> <tr> <th>해당세대</th> <th>본인</th> </tr> <tr> <td rowspan="3">세대원 있는 세대주</td> <td>3인 이하</td> <td>5,002,590원 이하</td> <td>4,002,072원 이하</td> </tr> <tr> <td>4인 · 5인</td> <td>5,846,903원 이하</td> <td>4,677,522원 이하</td> </tr> <tr> <td>6인</td> <td>6,220,005원 이하</td> <td>4,976,004원 이하</td> </tr> <tr> <td>그 외</td> <td>-</td> <td>-</td> <td>4,002,072원 이하</td> </tr> </table>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본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002,072원 이하	4인 · 5인	5,846,903원 이하	4,677,522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4,976,004원 이하	그 외	-	-	4,002,072원 이하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본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002,072원 이하																	
	4인 · 5인	5,846,903원 이하	4,677,522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4,976,004원 이하																	
그 외	-	-	4,002,072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05,805원(본인은 324,64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1,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면적 대학생계층)이 적용됩니다.
- ※ ①-㉔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㉔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㉔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충남 천안시, 아산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남 당진시, 공주시, 예산군, 충북 청주시, 진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예산군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순위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지역요건	천안시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자
------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천안시에 3년 이상 거주	천안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③ 국가유공자 (추가배점)	국가유공자* 가족(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3대(단, 독립유공자는 5대) 직계비속까지 포함) 중 1인 : 3점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전·공상·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등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신 후 현장에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16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신혼부부는 ①~②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②~⑥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모두 갖춘 자

①~②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월평균소득기준</th> </tr> </thead> <tbody> <tr> <td>3인 이하</td> <td>5,002,590원 이하</td> </tr> <tr> <td>4인 · 5인</td> <td>5,846,903원 이하</td> </tr> <tr> <td>6인</td> <td>6,220,005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05,805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초과인 경우 신청불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1주택을 공동으로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신혼부부 계층의 입주자격 중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과 본인(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 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충남 천안시, 아산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당진시, 공주시, 예산군, 충북 청주시, 진천군)이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예산군 제외)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순위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지역요건

지역요건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
------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천안시에 3년 이상 거주	천안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③ 국가유공자 (추가배점)	국가유공자* 가족(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3대(단, 독립유공자는 5대) 직계비속까지 포함) 중 1인 : 3점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전·공상·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등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신 후 현장에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천안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1953.08.30이전 출생)인 자

① 천안시·아산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월평균소득기준</th> </tr> </thead> <tbody> <tr> <td>3인 이하</td> <td>5,002,590원 이하</td> </tr> <tr> <td>4인 · 5인</td> <td>5,846,903원 이하</td> </tr> <tr> <td>6인</td> <td>6,220,005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05,805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지역요건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
-------------	-------------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천안시에 5년 이상 거주	-	천안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족(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3대(단, 독립유공자는 5대) 직계비속까지 포함) 중 1인, 보호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전·공상·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이용군인, 4.19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등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신 후 현장에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천안시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천안시·아산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지역요건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
-------------	-------------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천안시에 5년 이상 거주	-	천안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호보상대상자·5.18민주공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천안시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일시	‘18.09.12(수) 10:00 ~ ‘18.09.18(화) 16:00 ※ 현장접수는 상기 기간 중 매일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18.10.05(금) 16:00 이후	‘18.10.15(월) ~ ‘18.10.19(금)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19.1.4(금) 17:00 이후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예정	온라인계약 ‘19.1.18(금)10:00 ~ ‘19.1.20(일)16:00 현장계약 ‘19.1.22(화)10:00 ~ ‘19.1.24(목)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장소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apply.lh.or.kr) ※ 현장접수 장소 LH아산사업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현장접수장소 LH아산사업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온라인계약 국토부전자계약 시스템 irts.molit.go.kr ※ 현장계약 장소 LH아산사업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장재리 1741) LH 아산사업단”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는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 기간(9월 12일 ~ 18일 10:00 ~ 16:00)에 현장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함(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제외)**

■ **입주자 선정절차**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제외)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점대상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제외))는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신 후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18.10.05(금) 16시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18.10.15(월) ~ '18.10.19(금) 10시~16시 내(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방문 접수받습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현장 서류제출 장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장재리 1741) LH 아산사업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9월 18일(화) 오후 4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9월 18일(화) 오후 4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8.08.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하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하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공동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현재 임대차계약(전·월세)의 계약자로서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에 전입하여 거주 중이거나 부동산(건물, 토지)을 임차 및 임대 중인 경우 등(예 : 상가 등)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방)	1통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본),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확인원(필수) - 증빙이 어려울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주민센터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청년 (만19세이상~만39세이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 계층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확인원(필수) - 증빙이 어려울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공급신청 시 및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해당주택 신청을 대표신청자에게 위임함을 확인), 신청자 각각 (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주민센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계층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1)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2)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확인원(필수) - 증빙이 어려울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고령자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정(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확인원(필수) - 증빙이 어려울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보호대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호대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정(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호대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호대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 보호대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청약자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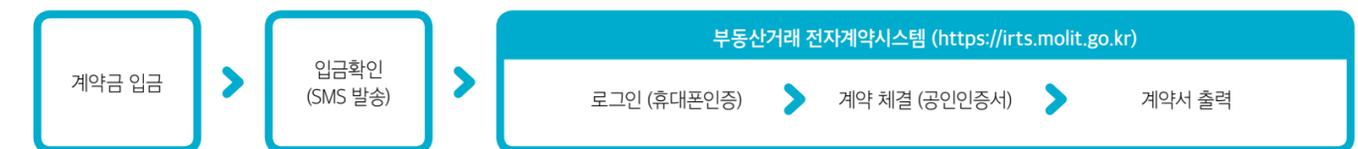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온라인 계약 [기간 : '19.1.18(금)10:00 ~ '19.1.20(일)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19.1.22(화) ~ ’19.1.24(목) 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동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래프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공동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총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야' 근로내역
	사업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은 본 행복주택 공고일 이전 당첨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경우,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은 편입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p>■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979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본 공고문의 청년계층은 2018.03.14 이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추가모집 및 예비입주자모집 포함)의 사회초년생 계층과 동일함을 유의하여 재청약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p>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마감재 및 발코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홍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관련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임대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법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품, 사육,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차,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자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수준			
■ 공공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경계소음	★
		외부소음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소음도
구조관련 등급	수리용이성	가변성	★★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환경관련 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환경관련 등급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환경관련 등급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재활용유리한환경인증제품사용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 이용	★★★★
	에너지 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를위하여특정물질사용금지	★★
생활환경 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교통부하저감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및지역중심과단지중심간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법안전	방법안전컨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운영/유지관리문서및지침제공의타당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아산탕정 1-A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314-82-13491)	건축 토목 소방	남양건설(주) 제일건설(주)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주)한동엔지니어링 (소방감리) *감리금액 : 286,000천원
		기계	(주)소림기계설비		
		전기	(주)성일		
		통신	(주)대건시스템즈		
		조경	청인건설(주)		
		가스	(주)용명이엔지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항목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기본 품목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욕실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선택 품목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의 높이에 비디오편 설치(노출배관으로 시공가능)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조명 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부엌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주방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렛 배부처	행복주택상담소(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장재리 1741)) LH대전충남 임대공급운영부(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임대문의 및 공급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천안신불당 행복주택상담소 : 041-537-2774 인터넷 -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 천안신불당 행복주택(아산탕정1-A1BL) 사이트(http://www.buldanga1.co.kr)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LH아산사업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장재리 1741)

2018.08.30

